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"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"

보 도 자 료

보도	2021. 4. 1.(목) 조간	배포	2021. 3. 31.(수)

담당부서	회계관리국	김세동 팀장(3145-7752), 오주상 선임(3145-7975)

제 목 : 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소유 · 경영 분리 여부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
◈ 대형비상장주식회사*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「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」을 제출해야 하며

*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

- 이를 통해 소유·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음

1 배 경

□ 소유·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

○ 잔여 감사계약기간 동안 연기*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'22년부터 실시('21년 중 통지 예정)

* 회사가 주기적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, '19년을 포함한 연속하는 3년의 감사계약기간('19~'21년) 종료 시까지 지정이 연기됨(외부감사규정 §14②제1호)

※ 위 지정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'20년에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소유·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총 28사

➡ 주기적 지정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대형비상장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유·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유의사항 등을 안내

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개요

◇ **6개 사업연도** 연속 외부감사인을 **자유선임**한 **상장사**(코넥스 제외) 및 **소유·경영 미분리*** **대형비상장회사**의 **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**

*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% 이상이고,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

'21년 주기적 지정 일정(12월 결산법인)

정기총회+14일	'21.9.1.	'21.9.14.	'21.10.14.	'21.10.29.	'21.11.12.
소유주식현황 자료제출 (회사)	지정대상 선정일	**지정기초 자료제출** (회사)	**지정감사인 사전통지** (금감원)	사전통지 의견제출 (회사)	**지정감사인 본통지** (금감원)

2 제도의 내용 및 유의사항

□ **대형비상장주식회사***는 **소유·경영 분리여부** 관련 자료**를 증선위(금감원에 위탁)에 **제출해야** 함(외부감사법 §23④)

* '20년말 기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3,222사

**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(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상 서식)

○ **(목적)** 주기적 지정 대상인 **소유·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**에 **해당하는지** 확인

○ **(제출기한)** 매 사업연도 **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**

○ **(방식)** 회사가 **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**(eacrs.fss.or.kr)을 통해 **제출**

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제출 개요

□ **(제출인) 회사**가 직접 **제출**(☞ 참고 "제출방법 안내")

□ **(제출서류)** ❶공문, ❷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, ❸대표이사 변동현황, ❹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, ❺법인등기부등본

□ **(안내자료) 금융감독원 회계포탈**(http://acct.fss.or.kr) ⇒ [외부감사인 선임] ⇒ [감사인 선임 FAQ] ⇒ **"대주주 등 소유주식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"** 참조

○ **(위반 시 제재) 증선위**는 증권발행제한, 임원 해임·면직 권고 등의 **조치**를 할 수 있음(외부감사법 §29①제2호)

□ 동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**대형비상장주식회사**가 **소유·경영 미분리 기준***에 **해당**할 경우 **「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」 제출의무****도 있으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

* ①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로서,
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% 이상이며,
③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

**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
(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금년에는 9.14.까지)(외부감사규정 §15③)

3 향후 계획

□ **대형비상장회사**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**유의사항을 안내**

○ 아울러 **금감원 홈페이지**(회계포탈) 또는 **전화**를 통한 상담/문의*에도 **신속히 답변**

* 홈페이지 문의 : 금감원 회계포탈(acct.fss.or.kr) 하단의 "질의회신 및 Q&A신청"을 클릭하여 Q&A를 이용하여 질의
전화문의 : (02) 3145-7761/7975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참고 제출방법 안내

1 첨부서류

1. 신고서 제출 공문(당해 회사의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현황 및 직전전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당해 자료 제출일까지의 대표이사 변동현황 포함)
2. 위 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% 이상(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25% 이상)인 경우에 직전전사업연도 개시일 이후의 대표이사 변동현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등본
3.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5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

2 제출 방법

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(http://eacrs.fss.or.kr)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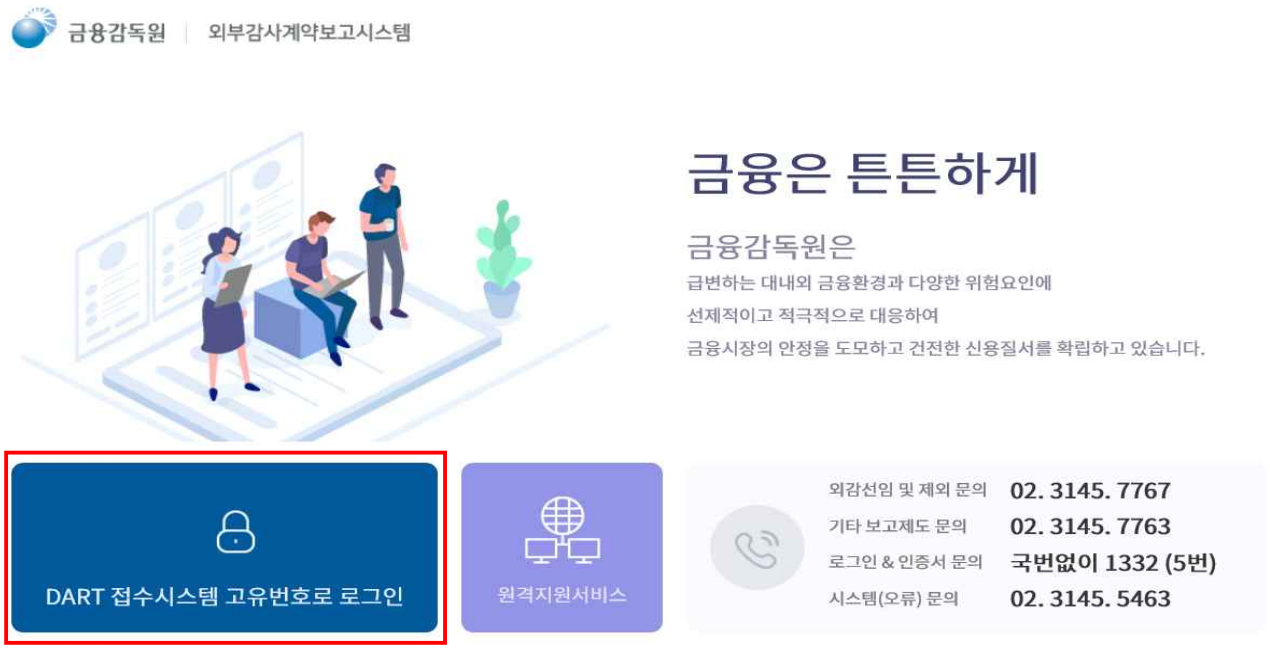

*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: 국번 없이 1332(이후 ⑤→①→①)

② 화면 상단의 '회사·제출서류' 탭을 선택한 후 화면 왼쪽에서 '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'을 클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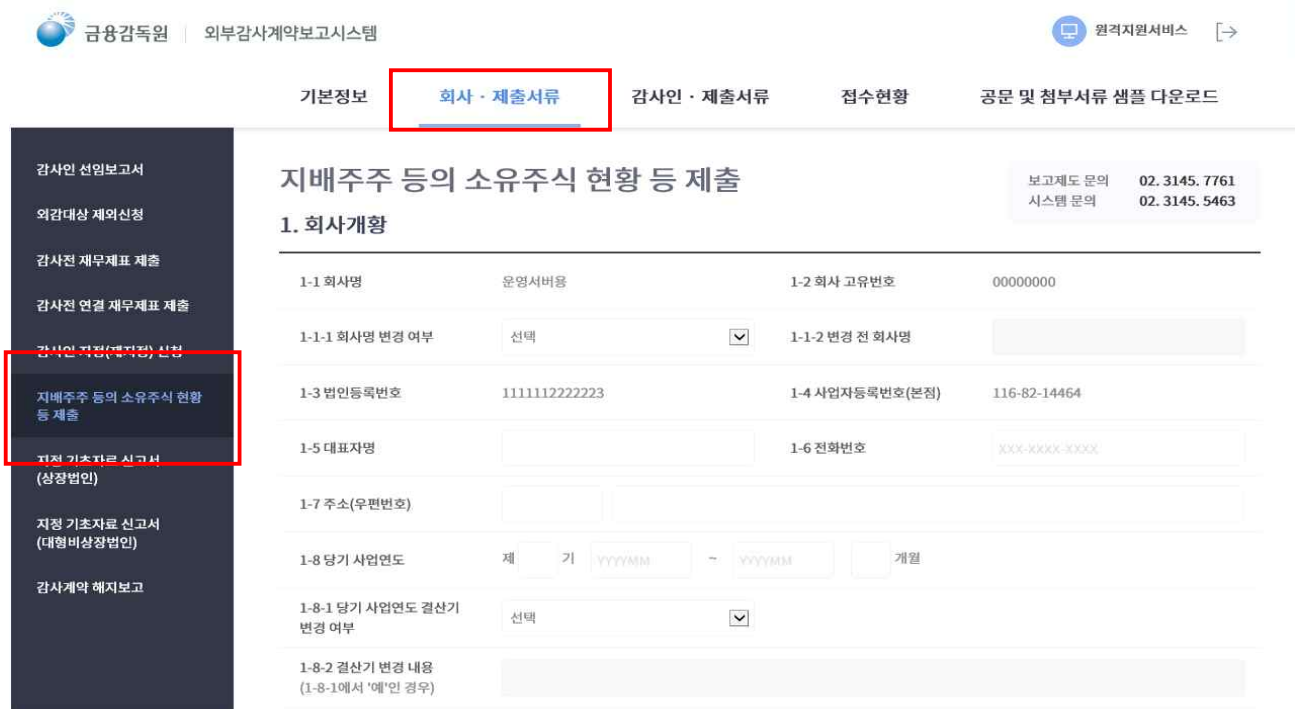

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작성

* 항목별 작성방법 : 금융감독원 회계포탈(http://acct.fss.or.kr) → "외부감사인 선임" → "외부감사FAQ" → "대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(2021년)" 자료를 참고

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

4.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법인 해당 여부

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

4-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	원	4-2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	%
4-3 회사 대표이사	4-3-1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	선택	
	4-3-2 해당 회사에 대한 소유주식수	주	
4-4 소유경영미분리 해당 여부	선택		
4-5 신고서 제출 공문 첨부		파일 선택	
4-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		파일 선택	
4-7 법인등기부등본		파일 선택	
4-8 기타 추가 제출 내역		파일 선택	

⑤ 제출 후 '접수현황'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 가능

(신) 제출현황

보고구분 선택 접수일자 2020.03.22 ~ 2021.03.22 조회

처리상태 선택 초기화

총 12 건

접수번호	보고구분	첨부파일	접수일시	처리상태	비고	처리일자
20210322000002	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		2021.03.22 09:56:25	접수완료		
20200909000028	외감대상 제외신청		2020.09.09 18:17:56	반송		2020.12.17

* 전산보안상의 이유로 제출된 문서의 수정·삭제가 불가능하므로 **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다시 업로드**(중복 제출시 최종 보고 내용으로 처리)